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담당자	서현탁 (044-201-3725)
민원인 신청번호	1AA-2110-0456420
접수일	2021-10-13 14:21:4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0-0466114
처리에정일	2021-11-01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1-10-21 17:06:31
처리결과 (답변내용)	<p>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 <p>2. 질의요지</p> <p>○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 처분이 있기 전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p> <p>○ 인가권자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열람공고나 변경인가 고시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하여 위법하다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해야하는 거 아닌지?</p> <p>3. 답변내용</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고시된 실시계획 상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을 자동</p>

상실(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 실무상 행해지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판례 2000두5142, 2000. 10. 13.)

○ 참고로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 경과로 인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여, 동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사실관계, 사업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1-3725)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국토교통부)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 매우만족 ★★★★★ ○ 만족 ★★★★★
- 보통 ★★★★★
- 불만 ★★★★★ ○ 매우불만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